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8866

제안연월일: 2025. 3.
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 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.

건 명	의안번호	대표발의자	발의일	전체회의 상정일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	1943	문정복의원	2024. 7. 18.	2024. 8. 20.
	4167	이수진의원	2024. 9. 23.	2024. 11. 14.

- 나.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2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 2소위원회(2025. 2. 20.)에서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.
- 다. 제422회국회(임시회)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(2025. 2. 21.) 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 - ※ 제422회국회(임시회)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(2025. 2. 21.) 비용 추계 생략 의결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6제2항제1호 중 "의료기관"을 "의료기관(이하 이 항에서 "의료기관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「간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	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			
절차 등) ① (생 략)	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			
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				
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				
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				
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				
신고하여야 한다.				
1. 의료법 제3조제1항의 <u>의료기</u>	1 <u>의료기</u>			
<u>관</u> 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	관(이하 이 항에서 "의료기			
인 및 의료기관의 장	<u>관"이라 한다)</u>			
<u><신 설></u>	1의2.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			
	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			
	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			
	는 「간호법」 제2조제3호에			
	따른 간호조무사 및 「사회복			
	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			
	<u>회복지사</u>			
2. ~ 16. (생 략)	2. ~ 16. (현행과 같음)		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		